

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 등)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

- 1. 기금운용관 :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(공무원교육원계정),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장(소방학교계정)
- 2. 분임기금운용관 :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(공무원교육원계정),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학과장(소방학교계정)
- 3. 기금출납원 : 분임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공무원

제11조(사무위임)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.

- 1.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계좌 설치에 관한 사항
- 2.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에 관한 사항
- 3.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운용기금에 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의 운용기금은 기금설치연도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한다.

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본문중 “6급”을 “7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19
----------	-----

2000. 7. .
기획경제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6월 13일,
서울특별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5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제3차 기획경제위원회
(2000년 6월 28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김우석)

가. 제안이유

소방서(동작)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동작소방서 신설

○ 위 치 : 동작구 신대방동 460-19

○ 관할구역 : 동작구 일원

소방서 관할구역 조정

○ 관악소방서 : 관악구 일원 (당초 관악구, 동작구 일원에서 동작구 삭제)

○ 동작소방서 : 동작구 일원 신설

다. 참고사항

관계법규 :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

※지방자치법 제104조(직속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·교육훈련기관·보건진료기관·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※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(설치) 특별시·광역시 및 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.

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동수)

○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신대방동 460번지 19호에 동작구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동작소방서가 2000년 8월 개설함에 따라 동 조례 제25조 제2항 별표1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관서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표에 이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관악소방서의 관할구역중 동작구 일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

<p>됩니다.</p> <p>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생략</p> <p>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(재석위원 13명,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)</p> <p>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620</td> <td style="width: 60%; text-align: right;">2000. 7. . 기획경제위원회</td> </tr> </table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6월 13일, 서울특별시시장 제출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5일 회부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(2000년 6월 28일 상정,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김우석)</p> <p>가. 제안이유 동작소방서 및 직할파출소와 119구조대 시설에 따른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소방직공무원 정원 증원 : 99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현행) 4,881명 → (개정) 4,980명 ※ 총 계 99명 동작소방서 37명 직할파출소 47명 119구조대 15명 <p>다. 참고사항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계법규 :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</p> <p>※ 제21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.</p>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동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소방서가 신설되어 2000년 8월 개정하게 됨에 따라 소요인력 	의안 번호	620	2000. 7. . 기획경제위원회	<p>99명을 증원하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5,661명에서 15,760명으로 하고, 부칙 제2조에 규정된 2000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총수(표1)는 16,369명에서 16,468명으로, 2001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총수(표2)는 16,019명에서 16,118명으로 각각 조정하며, - 동 조례 제2조와 부칙 제2조의 표1, 표2의 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각각 4,881명에서 4,980명으로 하는 것으로 <p>○ 신설된 동작소방서는 정원을 109명(본서 37명, 직할파출소 53명, 119구조대 19명)으로 책정하여 99명은 순증원하고 부족한 원중 10명은 타 소방관서에서 보충하는 것으로서 기존 소방서의 평균인력이 138명(본서 61명, 직할파출소 58명, 119구조대 19명)임을 감안할 때 금번 정원조정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.</p> <p>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생략</p> <p>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(재석위원 13명,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)</p> <p>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621</td> <td style="width: 60%; text-align: right;">2000. 7. . 기획경제위원회</td> </tr> </table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6월 13일, 서울특별시시장 제출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5일 회부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(2000년 6월 28일 상정,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김우석)</p> <p>가. 제안이유 하천법의 전문개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 및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에 따라 신설된</p>	의안 번호	621	2000. 7. . 기획경제위원회
의안 번호	620	2000. 7. . 기획경제위원회					
의안 번호	621	2000. 7. . 기획경제위원회					